

충남대학교 대학원 자치행정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의 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 과목은 응시자가 기 수강한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목은 4과목을 선택한다. 이때, 선택하는 과목은 교수당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은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체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 시험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⑦ 시험의 결과는 3년간 학과에서 보관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05점 이상

2. TOEIC 620점 이상

3. TOEFL(CBT) 183점 이상

4. TOEFL(iBT) 65점 이상

5. 충남대학교 시행 모의토익 620점 이상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 ①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을 등록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과의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 ③ 논문연구계획(프로포잘)을 공개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논문연구계획 공개 발표는 1학기의 경우 5월, 2학기의 경우 11월 중 학과에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아래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시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를 제출한다.

-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게재 편수는 1편 이상으로 한다.
- 3.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한다.
- 4. 인정환산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 5. 인정환산율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인 100% - 2인 70%
 - 3인 50% - 4인 이상 30%
- 6. 학술지게재 인정 기간은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7. 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후 2개월 내 게재가 되는 학술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재의 학과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